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89
------------	-------

발의연월일 : 2023. 11. 14.

발의자 : 정점식 · 유경준 · 박덕흠

김용판 · 김형동 · 횡보승희

김태호 · 성일종 · 이종성

박형수 · 유상범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 ·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범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징역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치료감호 집행 중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이수명령 집행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 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제43조제1항 및 제50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본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를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집행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을 “교정시설등의 장”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정시설의 장”을 “교정시설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우를 포함한다)-----.